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양수산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247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3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예정,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,

4) 법제처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해당하는 “각 호의 권한”을 “각 호의 권한(제2호의4·제4호의2·제5호의2·제5호의3·제5호의4·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4·제4호의2·제5호의2·제5호의3·제5호의4·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4. 법 제10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

4의2.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

5의2. 제3조제1항제1호·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,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및 주원료 표시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

5의3.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의 고시

5의4.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·고시

8.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·고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
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9조(권한의 위임) ① 법 제1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(제2호의3 및 제7호의 권한은 제외한다)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제9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 각 호의 권한(제2호의4·제4호의2·제5호의2·제5호의3·제5호의4·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은 제외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의3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2의3. (현행과 같음) <u>2의4. 법 제10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 제공</u>
3.·4. (생략) <u><신설></u>	3.·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 요청</u>
5. (생략) <u><신설></u>	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제3조제1항제1호·제2항</u>

	<u>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, 복합원재료를 사용 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및 주 원료 표시 세부기준에 관한 고 시</u>
<u><신 설></u>	<u>5의3.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산 지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의 고 시</u>
<u><신 설></u>	<u>5의4.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정 기관 지정 · 고시</u>
6. · 7. (생 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8.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기관 지정 · 고시 및 같은 조 제 6항에 따른 교육시행지침 제정 · 개정 또는 폐지</u>
<u><신 설></u>	<u>9. 제8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, 기준,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고시</u>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449